
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- 2019.12.30. 조직개편 이후 3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부군수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일부를 업무 소관 국장, 소장으로 분산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「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등 21건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,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령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